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4 - 699호

## 2024년도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업소 모집 공고(2차)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내·외국인 방문객,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좌식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실시하여 ①입식테이블 ②조리장 ③화장실을 교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4년 외식업소 환경개선(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일반음식점(입식테이블 교체 우선 모집)

※ 환경개선 지원사업 우선순위: ① 입식테이블 ② 조리장 ③ 화장실

⇒ 입식테이블 신청 미달 시 조리장 및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

다. 지원규모: 총 4개소 정도(지원 업소가 많은 경우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예정)

라.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50만원까지(자부담 50% 이상)

## 2. 신청자격

가. 남구 관내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나. 좌식 테이블이 있는 일반음식점

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한 업소

라.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마.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소

바. 신청 당시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이 없는 업소

## 3. 사업수행

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외식업소 영업주) 직접 수행

나.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테이블 수만큼만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계획변경 요청서 작성 후 남구청에 사전 승인 후 변경

다.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남구청에 사전 승인 후 변경

라. 보조금 지원받은 후 1년 이상 외식업소 영업 유지

## 4. 사업추진 기간: 2024년 11월까지

## 5.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24. 7. 1.(월)~9. 6.(금)

나. 접수장소: 대구 남구청 위생과(근무시간 내 접수)

## 다. 신청서류

- 1) 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 2) 단체(외식업소)소개서
- 3)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4) 시설개선동의서
- 5) 개선 전 현장 사진 2장 이상
- 6) 업체 견적서 2부(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
- 7) 영업신고증 사본
-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접수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남구 위생과 제출(근무 시간 내 접수)  
또는 이메일(hg35791@korea.kr)

마. 접수 및 문의처: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과(☎664-2765)

## 6. 심사 및 통보

가. 심의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나. 심사기준: 시설개선의 시급성, 개보수 후 효용성 검토,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다. 결정통보: 2024년 9~10월 중(예정) 개별 통보

## 7. 지원범위

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입식테이블, 조리장, 화장실로의 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원 제외한다.

※ 입식테이블 교체에 따른 의자 구매는 포함한다.

※ 벽지, 바닥재 등 단순 인테리어 변경 및 영업장 임의 확장부분 시설 설치 제외

나. 교체비용 중 자부담은 최소 50% 이상으로 한다.

## 8.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지원 결정된 금액을 보조사업자 교부 신청 →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좌이체도 가능

다. 사업 종료 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평가실시(필요시 현장조사)

## 9. 유의사항

-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한다.
-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남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 한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지원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마.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